

강릉시 고시 제2016 - 227호

## 낙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안)

「낙시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낙시어선업자 및 승객의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2일

강릉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낙시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낙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 수질오염의 방지, 수산자원의 보호 등 낙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낙시어선업자 및 선원(이하 "낙시어선업자"이라 한다) 및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낙시어선업의 낙시어선업자 및 낙시어선을 이용하는 승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영업시간)** 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낙시어선(이하 "낙시어선"이라 한다)의 영업시간은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로 한다. 다만, 선외기를 설치한 낙시어선은 동절기(11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는 09:00부터 16:00까지로 하며, 하절기(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7: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제4조(영업구역)** 낙시어선의 영업구역은 강원도 관할 수역 해안선으로부터 연안 7마일 이내 수역으로 한다. 단, 선외기를 설치한 낙시어선은 연안 3마일 이내 수역으로 한다.

**제5조(안전운항 준수사항)** ① 낙시어선업자는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해상안전법, 어촌·어항법, 항만법, 개항질서법 등에 의한 제한 및 통제구역에서는 낙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갯바위, 간출암, 무인도서 등에 승객을 하선 시키는 행위를 금한다.
3. 낚시어선업자는 출항 전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낚시어선에 승선한 낚시어선업자(선원 포함) 및 낚시어선의 승객 전원에게 영업 종료 시까지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객이 출항 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면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4. 충돌, 좌초 또는 그 밖에 승객의 위급한 상황 및 해상 추락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명구조 활동 등 사고의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에게 정확한 ‘승선자 명부’ 작성을 요구하고 허위 작성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6.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출항 전 항해·통신·기관·추진장치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한다.
7. 낚시어선업자(선원)는 승선하려는 낚시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승선명부의 기재 내용을 확인, 유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② 낚시어선의 승객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선장의 지시 및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3. 선장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한다.
4. 수산물의 불법 포획·채취 행위 및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방류한 치어를 포획하는 행위를 금한다.
5. 해상에 유류, 분뇨, 폐기물 등을 버리는 행위를 금한다.
6.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승객은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요구하는 ‘승선자 명부’ 작성 시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거짓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7. 승객은 출항 시부터 안전하게 입항할 때까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8. 낚시어선(선상)에서 승객의 음주나 기타 선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동을 금한다.
9. 승선자명부의 정확한 작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의 신분증 제시 요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기타 준수사항)** ① 낚시어선업자는 출항 전에 제5조 제2항에 의한 승객의 준수사항 및 선장의 지도, 요구사항을 따라야 함을 교육시켜야 한다.

② 낚시어선업자는 다른 시·군의 관할구역 내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할 시장·군수의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강릉시 고시 제2016-130호 (2016.5.26.)는 이를 폐지한다.